〈提　　言〉

技術士는 技術立國에서 엔지니어링 活動의 主體이어야 한다

Professional engineer must be a subjective of engineering activities in industrialism

朴　　炅　　珍*
Park, Kyung Jin

目　　次

1. 머릿말
2. 韓國은 政策的으로 技術立國이다.
3. 의무고용제 완화는 잘못된 判斷
4. 科學技術處의 無用論
5. 經實聯의 주장
6. 협소한 技術用役 분야에 業體의 지나친 증가는 質의 저하를 초래한다.
7. 技術士는 엔지니어링活動의 實質的인 主體이어야 한다.
8. 産業發展을 위한 技術엘리트 集團은 유지되어야 한다.
9. 金泳三 大統領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드리는 호소문
10. 맺는말

1. 머릿말

최근 先進國에서는 政策評價의 重要性이 매우 강조되어가고 있다. 政府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公職者의 잘못된 판단은 國家發展과 國民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어 단순히 시행착오로 돌렸던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달리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며,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政策을 비판하고 좋은 방향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政策의 立案에 앞서 그 결과를 세밀히 예측하여야 하고, 탁상이론만 고집하지 말고, 현장의 실태를 감안한 건전한 건의는 귀를 크게열고 들을줄 아는 公職者를 국민들은 必要로 한다.

現在 科學技術處에 技術立國에 맞는 제도개선과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 施行規則의 개정이 건의되고 있으나, 관료주의적으로 굳어져 舊世代와 다름없이 변함이 없다면 技術士의 活用策이 삭제된 技術士法과 사용할수 없는 기술사자격증은 집단적으로 科學技術處長官에게 반납하는 등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政策評價學의 理論에 의하면 새로운 制度의 실시후에 나타난 중간 評價에서 부작용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할 때는 可能限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다. 韓國技術士會와 엔지니어링振興協會에는 不公平과 부작용에 따르는 항의 電話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으므로, 우선 科學技術處의 결단만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施行規則을 93年中에 몇개의 條項만이라도 변경하고, 94年中에 專門技術用役業분야는 先進國

*電氣通信技術士, 韓國技術士會政策委員

과 같이 技術士法으로 이양하여야 現在와 같이 형식적이고 거품과 같은 입찰전용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出現을 방지하고 國家產業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

2. 韓國은 政策的으로 技術立國이다

우리의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우리 8,000餘 技術士들은 많은 노력으로 획득한 國家가 부여한 기술자격증이, 무자격 무경험의 大學을 갖나온 많은 學士學位에 밀려, 制度的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對策은 너무나 미미하고 소위 技術立國에서 최고의 技術能力者들이 無氣力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產業技術現場에서 묵묵히 일하며 인내로서 부당한 制度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우리 技術士들은, 이젠 말과 行動으로 부당한 政策에 대해 政府에 항의 하여야 하고 國民에게 호소하여 오늘날의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

어느 일간신문의 社說에 "技術指向의 政策선택을"이라는 題目으로 기사화한 내용을 한 언론인의 시각으로 技術人을 경시하여온 한국병인 技術政策의 허구성의 一面을 지적하였다.

그 內容의 一部를 보면 技術立國임을 선전하며 계획한 技術指向의 政策이 總論은 대단한데, 實行에 重要한 各論은 소홀하다는 것이다.

技術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총론적인 면에서는 정책담당자와 경제계인사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정책결정, 우선순위책정, 制度의 운영, 技術資格者의 產業분야에서의 活用등, 各論的인 面에서는 인문계열에 비하여 소홀하다는 것이다.

지난 7月경 國會議員會館 회의실에서 열렸던 "不實工事防止를 爲한 制度改善政策討論會"에서 한 연사의 발표는 감명 깊었다. 즉, 技術에 관한 重要政策을 전문기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기술인들이 決定하고, 잘되면 그들의 공이고 結果가 좋지않으면 그 책임은 기술인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技術士등의 技術人을 노무자보다 조금 더 대우하는 우리 社會의 풍토를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병을 치료하겠다고 한 文民政府에 와서는 오히려 더 중병으로, 大學을 졸업한 후 10餘年이상의 現場경력과, 專攻분야의 國內外 서적들과 無數한 논문등을 소화하고 國家考試에 合格한 技術士를 이제 大學을 갓나온 學士學位者와 同一한 一人으로 취급하고 있는 施行規則을 만들었으니, 金泳三 大統領의 의지는 科學技術處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지나치게 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社說은 政策으로 決定된 內容과 나아가야 할 方向이 같다면 그 실천방향도 軌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論理가 技術指向的인 政策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은 技術立國下에서 엔지니어링產業을 주도하여야 할 技術士의 活用策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용역법에서는 技術士活用策이 그런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 法을 개정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을 의식하여 이번에 制定된 技術士法에서는 韓國技術士會에서 要求한 技術士活用條項들이 대부분 삭제되고 의무조항등만 나열되어 있어 技術士法 개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도 國家產業發展을 위하여 곧 개정되어야 한다. 技 用役業에 第一 비중이 큰 것은 技術能力이다. 그런데 技術人力 구성이 부실한 이 法은 외래어까지 사용하여 일명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이란 이름으로 나타나 國家技術資格者에게 큰 실망을 주고 用役入札에서의 혼란과 형식적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들이 技術發展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9月 건설회관에서 2일에 걸쳐 이 法에 관련된 강습회가 있었다. 그때 어느부처의 서기관의 말이 그전의 技術用役法은 발음하기가 쉬웠으나 지금은 너무 길어 줄여서 엔지(NG)법이라고 말하겠다고 하였다. 영화나 TV연속

극 촬영시 배우나 탈랜트의 실수가 있으면 엔·지라 하듯이 이 法은 다시 고쳐야 한다는 表現과 우연히 일치가 된다.

그날 科學技術處 기술용역과장의 說明은 탁상이론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은 종전의 산업설비 용역분야와 종합건설기술용역분야만 포함시키고 미국 일본등의 先進國과 같이 종전의 專門技術用役業은 技術士法의 소관으로 넘겨주어야 마땅하다. 미국은 professional Engineer가 아니면 技術用役業을 할수없고, 日本은 구태여 技術士法에 명시하지 않아도 사회적 환경이 韓國과 달라 技術士가 당연히 설계 감리 조사등의 모든 技術用役業을 하는 것이 사회관습으로 정착되었기에, 政府의 발주부처도 이에 따라 技術士에게 技術用役業務를 전담시키고 있다고 한다.

오직 韓國만이 技術資格者가 아닌 一般事業者에게 專門技術用役業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專門技術用役業은 技術士에게 돌려주기를 8,000餘 技術士들의 이름으로 文民政府에 촉구한다. 日本技術士들의 명함을 받아보면 ○○技術士事務所 會長 ○○技術士事務所 社長, 所長등의 직책이며 韓國과 같이 어느 技術用役會社에 적을 둔 사람은 극소수이다.

3. 의무고용제 완화는 잘못된 판단

승용차 네바퀴의 질좋은 타이어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技術能力수준을 낮추듯이 불량품이거나 質이 낮은 타이어를 使用한다면 처음에는 굴러가는것 같으나 얼마가지 않아 운전자와 승객모두가 불편을 당하게 될것이다. 現在 技術士와 기사자격자의 活用을 가로막는 싼임금의 學士학위로 완화된 法에 의한 형식적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급증은 國家技術資格者뿐만 아니라 事業主와 근무하는 職員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여 종전법으로 환원되거나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事業主는 入社질서의 혼란으로 물량확보가 어려워 회사규모를 줄이거나 도산하게 되고 技術士는 전직해야 하며 職員들은 인원감축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本人의 會社도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으로 인하여 많은 職員을 줄여야 했는데, 제발 科學技術處는 이런 現實을 인정하고 벌써 엔-지가 난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의 施行規則 第3條 技術人力 구성에 技術士를 "포함한"의 단어를 넣어 우선 개정하여야 할것이다.

체면상 같은 담당자가 그렇게 할수 없다면 現在의 담당 局長 課長을 전직시키고 새로운 담당자로 하여금 혼란된 상태를 수습하게 하는 것이 文民政府로써 產業發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새삼 형식적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내막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만일 감사원에서 몇개의 會社를 방문하여 조사한다면 이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어떤 평을 받을 까 걱정되며, 그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法에서 能力者면 누구나 할수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能力者는 과연 누구인가? 國家가 객관적으로 能力을 증명해준 國家技術資格者가 아니고,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발부받은 비기술자, 노인 할머니들이라는 말인가! 일가 친척중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무서에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신고하자면 한 事業主가 50개, 100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설계팀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20%정도인데, 이 法의 施行規則이 곧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10%, 5%로 더 낮아질것이다.

미국, 日本등이 技術士를 잘 보호해 주는데 비해, 韓國은 大多數의 의견을 묵살하고 극소수의 政策집행자가 특정의 큰 회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이해못할 方法으로, 지금까지 겨우 合格者의 25%만 진출하고 있는, 여분이 많은 技術士人力을 產業現場에 活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비자격자와 비경험자로 技術人力을 구성하는 것은 技術發展을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과학기술계의 의견보다는 담당공무원의 무지와 아집과 기술사를 우롱하는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단순하고 우매한 판단이 韓國技術係의 엘리트 집단인 8,000餘 技術士와 그가족, 그리고 100만 국가기술 자격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文民政府를 不信하게 하며, 技術人의 긍지를 잃게 하여 國家技術發展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발달한 政策評價 理論에 의하면 모든 政策決定者 및 政策執行者는 效果的이고, 公正한 정책추진을 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制度가 잘못되면 그 피해를 받은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되는데, 단순한 시행착오로 가볍게 마무리 짓는 지금까지의 전통은 버려야 한다.

4. 科學技術處의 무용론

선배技術士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技術士들이 경제기획원에 속해 있을때가 技術人의 긍지를 더 갖게 하였고, 科學技術處가 생긴후 업무가 이관된 후에 技術士의 수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先進國은 國家政策이 技術人을 우대하므로 우수한 두뇌들이 理工系를 선호한다고 한다. 韓國은 科學技術處를 기술말살처로 오인하고 행정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技術用役業에 어떠한 통제도 간섭도 하지않고 자유방임적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허용하여, 用役業係의 혼란으로 技術人力을 떠나게 한다면 技術用役課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형식적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數만 증가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이 촉진되는것이 아니다. 나는 과학기술은 잘 모르지만, 과학기술 행정은 이렇게 저렇게 고쳐야 한다는 어떤 행정관료나 담당자의 즉흥적인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본다. 그에 따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5. 經實聯의 주장

신문에 발표된 經實聯의 주장에 의하면 企業活動의 규제완화책으로 의무고용 자격자를 줄여주는 법개정은 도리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경실연은 성명서에서 이 의무고용 규제 완화 법안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1) 長期的으로 경제적 사회적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2) 각산업분야의 의무고용 완화는 행정편의주의적인 政策의 표본으로 산업안전 보건분야의 경우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무방비 상태로 늘어나 일정기간 후에는 결국 업체의 비용이 현재보다 4배에 이른다고 하였다.

3) 現實을 무시한 자격자의 의무고용완화만 선호하는 것은, 행주대교 붕괴나 구포역 열차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와 직결될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들과 같이 국민의 재산과 生命에 직결되는 國策事業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이 발주하는 대형공사 설계와 감리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기술사 대신 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무경험무자격자인 단순한 學士로 대체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제도의 발상인지를 정부와 과학기술처는 하루빨리 인식하고, 중복된 요구지만 전문기술용역은 기술사법으로 이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昨今의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의 시행규칙은 서둘러 개정하여야 형식적이고 입찰전용의 회사가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이 적어지며 국가기술자격고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착오로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으면 구차한 변명은 그만두고 보안책과 잘못된 규정을 하루빨리 고쳐야한다. 설명회, 강습회등을 통한 지루한 변명은 이제는 제발 그만 두어야 한다.

6. 협소한 기술용역시장에 업체의 지나친 증가는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지난 9月 17日 建設會館에서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 主體로 열린 엔지니어링講習會에서 科學技術處 技術用役課長은 事業主, 技術士, 소속된 종업원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는, 現實에 맞지 않는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에 대한 구차한 설명을 하면서 또한번 탁상이론의 허구성을 내세웠다.

즉 교재 11쪽 下部에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는 표에 의하면 20年前과 비교해서

- 업체수는 11배 증가하고,
- 기술인력수는 22배 증가했으며,
- 국내의 수주액은 602배 증가하였다고 하나, 본인이 60년대후반 5급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봉급이 4,500원이었으며 그때는 보너스도 없었다. 현재 9급공무원의 봉급은 보너스까지 합하여 약 60만원정도라고 하면 무려 130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마 用役課長 本人의 봉급도 20年前에 비해 100배는 올랐을 것이니 괄목할만한 봉급의 상승으로 超上流의 生活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의 인플레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교재 11쪽 통계의 수주액은 602÷100이상으로 해야 하며, 업체수 11배 증가에 실수주액은 약 6배 증가했다고 보아야 현실에 맞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이론의 政策立案 공무원들 때문에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 중요시된 政策評價가 韓國에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現在 각 大學과 大學院에서 政策評價 전공이 신설되고 있다고 함은 다행한 일이다.

거품의 엔지니어링 政策下에서 거품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거품같이 늘어나, 최근 기술용역 入札에 한사람이 20여개의 入札權을 가지고 다니며, 길가는 사람까지 동원하여 입찰장소에 입석시키고 있어, 소액의 입찰장소에도 온통 사람의 홍수이며, 150여명의 직원을 둔 건실한 회사나,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만 한, 용역업에 전혀 상식이 없는 소위 엔지니어링活動主體나 똑같은 入札權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건실한 큰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기술인력의 완화가 실시된 통신기술용역업의 경우, 18개 업체가 40개월만에 90개 업체로 늘어나 5배의 업체증가를 가져왔는데, 설계팀이 없는 공사업체나 제조업체가 형식적으로 용역업을 등록하여, 경쟁입찰에서 낙찰되면 설계팀이 있는 기존 전문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90개의 업체중 설계팀이 구성된 것은 약 20개 업체뿐이다.

또한 각 발주처에서 科學技術處 技術用役課에 문의하면 능력이 있는자는 능력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취지라고 막연하게 대답하고서 정확한 능력의 기준은 정해주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 할 수없는 행정을 하면서, 그들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직을 부그럼없이 유지하고 있는것이다.

적절한 기술력을 확보한 건실한 회사가 존속되어야 연구의 풍토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며 선진국의 기술속국을 면할 수 있다.

7. 技術士는 엔지니어링活動의 실질적인 主體이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 제1조(목적)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技術집약화를 촉진하도록 되어있고, 제2조(정의) 3호에 "엔지니어링 기술"이 언급되어 있으며, 第3條(지원시책의 강구) ②항에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자의 雇傭을 확대할 수 있도록 勸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必要한 시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同施行令과 施行規則에서 活用策을 강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同施行規則에 단순한 學士와 同一時함은 명백한 위헌임을 자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자의 변경은 담당공무원 개인의 보신을 위하여 미루기 보다는 國家 產業發展을 위하여 과감하게 개정하여야 하고, 全技術士중 活用되지 못한 6,000여명의(75%) 技術士가 技術力을 유일

하게 活用할수 있는 技術用役業에 긍지를 가지고 進出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活動主體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기술용역업은 技術士法으로 넘기든지, 시기가 빠르다면 당분간 施行規則 第3條 ①항 2호에 技術人力中 技術士를 포함한 기사1급과 학사이상 학위자로 곧 개정할것을 재삼 촉구한다. 그리고 무한히 늘어나는 형식적인 입찰전용업체나 사업부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8. 産業發展을 위한 技術엘리트 집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技術을 경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工大入學 희망자만 고등학교 졸업자면 能力의 有無에 관계없이 12년의 학생경력을 인정하여 누구나 입학할수 있고, 교육부는 편안히 앉아 입학신청자에 대한 확인행정만 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10년 경력자나 법대졸업후 경험이 없는 法學士에게도 누구나 변호사업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학과 법학의 엘리트 집단은 형성될 수 없고 평준화, 단순화, 퇴보화로 전개될 것이다.

기술용역업에서의 자격조건 완화도, 기술엘리트집단의 붕괴를 가져와 國家産業發展에 역행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점점 증폭될 것이다.

기술엘리트집단인 기술사들을 學士學位소지자로 대치하는 웃지못할 완화책이 지속된다면 어려운 자격시험공부나 연구를 할 필요없이 흔한 學士학위 그자체로 만족할 것이다. 간혹 극소수의 기술사들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이런일은 어느 전문분야에도 존재하는 일이며 이를 너무 증폭하여 과장된 악선전은 삼가 하여야 한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극소수는 비판을 받을만한 공무원이 있을수 있다.

9. 김영삼 대통령과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드리는 호소문

신한국 건설과 신경제를 창조하고 오랜 한국병을 치료한다는 대통령께 기대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실망을 주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동양의 4마리의 용에서 뒤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술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 과학기술처는 대통령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기술경시행정은 문민정부 이전보다 더욱 혹심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형식적회사의 난립으로 혼란은 극에 달해 한 사업주가 입찰용 업체를 3~4개씩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과 능력있는 기술인력을 떠나게 하고, 많은 중소기업체의 도산을 가져오게 하는 악법인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시행규칙을 '93. 5. 26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에 한국 기술사회 8,000여 技術士들은 마음을 모아 同施行規則을 빠른시일내에 개정하여 줄 것을 대통령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 합니다. 또한 우리 技術士들의 바램을 아래와 같이 강조합니다.

1) "科學技術處는 技術士의 活用策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技術人力을 중요시한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과학기술처의 편견에 의한 기술력이 낮은 학력선호 행정으로 새로운 法이 개정 혹은 제정될때마다 技術士, 技士등의 기술자격자의 위상을 격하하여, 경험과 專門的理論이 要求되는 産業現場에 技術士 대신 단순學士로 대체하여 부실공사를 가져오게 하고 있으니, 많은 技術士들이 설계나 감리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 "法을 왜곡한 施行規則은 곧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술용역 분야를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우리 技術士들은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3條에 技術士들의 활용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활용책을 넣지 않아 기술사들을 기술용역 분야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 최소한의 기술사

를 포함하게 하여 기술 성과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는 것이 입법예고 당시의 기술사회와 용역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처가 외면한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문민정부에서는 큰 한국병인 기술경시 행정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랜 한국병인 기술경시 행정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보다 더 상위인 기술사를 공학사와 同一하게 나열함으로서 기술사의 자격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기술인이 되었던 것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사의 능력이 동일시 평가 될수 없고, 회계사와 경제학사의 능력을 같이 평가할 수 없음을 과학기술처는 알아야 합니다.

4) "존경하는 대통령의 공정한 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8,000여 기술사들이 그동안 축적한 고차적인 이론과 경험으로 國家技術產業發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약 75%의 미활용 기술사가 技術人의 긍지를 가지고 기술발전을 주도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맺는말

文民政府에서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이 잘못 이해되어서, 용역업과 공사업의 신고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이름뿐인 회사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시키는 연구개발팀을 구성할 수 없고 자회사 입찰인으로 완화되기전의 4~5배의 인원을 동원하여 입찰현장에서 인력과 교통비만 낭비시키고 있다.

토목분야에 종사한 P사장은 한숨어린 푸념으로 요즈음 회사만들기가 쉬어 4개회사로 입찰을 보아도 전보다 수주가 어렵다며 4개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겨우 4명뿐이므로 어렵게 지탱하고 있다고 하였다.

과연 문민정부의 신경제는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행정규제만 완화하면 되는데, 덩달아 기술분야의 의무고용 완화는 기술력 저하와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80세 넘은 할머니가 세무서에 기술용역 사업신고만 하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엄연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획득할 수 있어 통제가 전무하며, 팔장끼고 구경만 하는 科學技術處는 전혀 하는 일이 없다.

韓國이 미국에 자동차 한대를 팔 경우 50만원의 이익이 있다면, 日本이 미국에 비슷한 자동차 한대를 팔면 100만원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設計技術을 先進國에서 빌려오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결국 實質的인 이익은 적다고 한다.

단순한 技術이 아닌 高次元의 技術이 要求되는 技術用役의 發展이 國家產業發展에 직결되며, 형식적인 업체수는 힘을 분화시켜 發展에 역행한다. 이렇게 高度의 技術이 要求되는 設計나 施工 監理등의 入札은 技術人力의 구성과 그 능력에 따른 制限入札을 과감히 그리고 빨리 신현하여야 한다.

유능한 연주가는 좋은 악기가 必要하듯이 유능한 기술용역 경영자는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技術士와 잘 조화되어야 양질의 用役成果品이 나오고 技術發展이 원할해 질 것이다.

技術人力 완화政策이 당장은 人員확보에 좋을지라도 그에 따른 入札用 業體數 증가 結果는 通信분야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혼란된 기술용역업에서 유능한 技術士들이 전직함으로써 技術發展에 도움이 되지 않는점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을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施行規則부터 곧 개정하여야 할것이다.(총리령이므로 개정이 용이함)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기술"에 해당되는데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은 곧 技術技術振興法으로 技術을 두번씩 강조한 것은 技術과 이 技術의 최고자격자인 技術士의 重要性을 인식한 法이기를 바란다.

1993. 10. 18